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20년 10월 23일 12시 정각

○ 개최장소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112(식당 3선)

○ 출석임원 : 김서현, 정재숙, 김광수, 조미영, 이주덕

대표이사 김서현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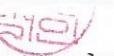
안건 : 종합재가기관 신축의 건

- 김서현 대표이사 : 시간 내어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안건은 종합재가기관 신축의 건이며 이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종합재가기관 신축 진행에 대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종합재가기관 신축 터파기 도중 뒷집에 균열이 생겨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어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민원인이 피해액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방문 및 합의를 하려고하였으나 피해액이 법인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시공사에서도 접촉을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중인 상태로 감정인이 지정되어 다음 주 월요일(10월 26일)부터 감정을 시작합니다.

- 김광수 이사 : 민원인이 제시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 김서현 대표이사 : 최소 1억 이상입니다.

- 이주덕 이사 : 집이 60년 이상되지않았나요? 주택의 가격은 나왔나요?
- 김서현 대표이사 : 이번 감정에서 주택 감정가는 빼고 계속 공사를 진행 했을 경우 민원인 주택에 더 이상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피해금액이 얼마인 지, 지금 토목 공법이 맞지 않다면 다른 공법이 없는지에 대한 감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의 가격은 60년이 넘은 슬래트 목조 주택으로 거의 가격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 정재숙 이사 : 올해안에 준공되어야 교부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 김서현 대표이사 : 그렇습니다. 강서구청과 몇차례 구두상으로 신축 기간 연장 요청을 하였으나 원칙은 국고보조금 반납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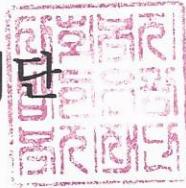
-     
- 조미영 이사 : 법인 입장에서는 합의나 국고보조금 반납밖에는 선택 할 수 없는가요?
- 김서현 대표이사 :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합의를 봐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올해안에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시공사 대표에게 전달받았습니다.
- 김광수 이사 : 결국에는 합의를 보고 공사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뜻 인군요?
- 김서현 대표이사 : 네. 그렇습니다.
- 이주덕 이사 : 그러면 법인에서 할 수 있는것은 공사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군요?

- 조미영 이사 :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위해서 시·구청과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 김서현 대표이사 : 다른 이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광수 이사 :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국고보조금 반납이 되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국고보조금을 보충하여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법인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볼수있네요.
- 김서현 대표이사 :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조미영 이사 : 결국에는 시·구청에서 기간을 연장해주던지 아님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법인이 고의로 지연시킨것도 아니고 공사 도중 소송에 의하여 길어져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것도 연기가 안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아닌가요?
  
- 김서현 대표이사 :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 결과가 나오면 시·구청과 협의를 해야할것입니다. 공사 기간 연장이 안되면 우리 법인에게는 행정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것 같군요.
- 조미영 이사 : 그렇것같습니다. 다른 이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주덕, 김광수, 정재숙 이사 : 같은 생각입니다.
- 김서현 대표이사 : 오늘의 안건인 종합재가기관 신축에 대하여 시·구청과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하여 협의하며, 공사 기간 연장 불가하면 이사님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건 및 추가 발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결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시각은 13시 10분이었음)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가 기명 날인하다.

2020년 10월 23일

사회복지법인 은광복지재단



대표이사 김 서 현



이사 이 주 덕



이사 김 광 수



이사 조 미 영



이사 정 재 숙



이사 김 서 현
이사 이 주 덕
이사 김 광 수
이사 조 미 영
이사 정 재 숙